

5월 종합소득세 · 개인지방소득세,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

- 국세청, 2021. 5

- (개요) '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. 31.(월)까지*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 - *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·납부기한은 6. 30.(수)
 -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·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,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, 모바일(손택스),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(세정지원)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 명의 납부기한을 8. 31.(화)까지 연장합니다.
 - * 집합금지·영업제한 소상공인, 영세 자영업자,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, 착한임대인
 -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·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 - 또한, 환급대상자*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. 23.(수)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.
 - *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
 -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*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 - *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(국번없이 126번 > 6번), 국세청 누리집 전용코너

- (신고편의)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하였습니다.
 -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(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)의 모두채움*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,
 - *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
 - 단순경비율 모두채움, 모바일,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,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(90명 → 148명)합니다.

- 아울러, 간편 로그인,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,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*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.
- * ① 5. 1.~ 30.(다음날 오전 1시), ② 신고 마지막 날인 5. 31.(월)은 24시까지
- (성실신고 지원) 빅데이터 고도화,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,
 - 고소득자,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여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.
 -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개인지방소득세 신고)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*가 시행 중입니다.
 - * '14년 소득세의 부가세(sur tax)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
 -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) 뿐만 아니라 모바일2)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.
 - 1) 홈택스(국세) → 위택스(지방세) 2) 손택스(홈택스의 모바일 앱) → 위택스
 - 콜센터(☎1661-0544) 상담원을 대폭 증원(30명 → 60명)하여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·3개월 연장(5·6월말 → 8월말)하기로 하였습니다.
 -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*하겠습니다.
 - * 환급시기: (예년) 7월 → (올해) 6월말

1 '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, 5월 31일까지

- (신고·납부 대상) '20년도에 종합소득*이 있는 개인은 '21. 5. 31.(월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 - * 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(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)
 - 신고 마지막 날인 5. 31.(월)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성실신고확인 대상자*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'21. 6. 30.(수)까지 신고·납부하면 됩니다.

- * 업종별 '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(소득세법 § 70의2)
 - : ① 도·소매 등 15억 원, ② 음식·숙박업 등 7.5억 원, ③ 임대·서비스업 등 5억 원
-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*는 국내·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,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.
 - *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(소득세법 § 1의2①)

▶ 납세자별 신고·납부기한 ▶

구 분		5. 31.(월) 24시	6. 30.(수) 24시	8. 31.(화) 24시
일반 납세자	세정지원 대상 외	신고·납부		
	세정지원 대상*	신고		납부
성실신고 확인대상	세정지원 대상 외		신고·납부	
	세정지원 대상*		신고	납부

* 납부기한이 '21. 8. 31.(화)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(4페이지 참조)

- (코로나19 예방)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특히, 모두채움 신고*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, ARS, 우편,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- * 모두채움 신고서: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

모두채움 대상	신고 방법
단순경비율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	홈택스, 모바일(손택스), ARS, 우편, 팩스
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	홈택스, 모바일(손택스), 우편, 팩스

- (신고상담)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(☎ 국번 없이 126)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

2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

1.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

- (추진 배경) 일 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으며,
 -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합니다.

- (납부기한 직권연장)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. 31.(화)까지 직권 연장합니다.

- *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(3개월 연장): '21. 5. 31.(월) → '21. 8. 31.(화)
-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(2개월 연장): '21. 6. 30.(수) → '21. 8. 31.(화)

구 분	지 원 대 상	요건	제 외
① 집합금지·영업제한 소상공인	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」 지원 기준 사업자(중소벤처기업부)	'21. 5. 31. 까지 ¹⁾ 소득세 신고	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
② 영세 자영업자	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* 미만자 * ① 도·소매업 등 6억원 ② 제조업 등 3억원 ③ 서비스업 등 1.5억원		전문직, 부동산 임대, 대부업,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
③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	매출 20% 이상 감소 &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* 미만자 * ① 도·소매업 등 15억원 ② 제조업 등 7.5억원 ③ 서비스업 등 5억원		전문직, 부동산 임대, 대부업, 호황업,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
④ 착한임대인	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정한 상가임대사업자 *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요건 충족하는 임대사업자		'21. 5. 31. 까지 ¹⁾ 소득세 신고 &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

1)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. 30.(수)까지 2) 분납기한도 '21. 11. 1.까지 자동연장

- ① 집합금지·영업제한 소상공인, ② 영세 자영업자, ③ 매출급감 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(8.31.)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,
-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*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홈택스 > 로그인 > 안내문 선택 >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

- ④ 착한임대인(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)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. 31.(화)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*됩니다.

* 6.10.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.10.) 이후 납부기한 연장 확인 가능: 홈택스 > 로그인 > 신청/제출 > 주요 세무서류 신청 >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> 신청(직권승인)내역

- (신청에 의한 연장)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·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.

* (신청방법) 홈택스 > 로그인 > 신청/제출 > 주요 세무서류 신청 >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

- 연장된 신고·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.



-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,
 -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 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.
- (환급금 조기지급)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. 23.(수)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.

2. 착한임대인·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

- (착한임대인)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 -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·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*하는 한편,
 - * 착한임대인 세정지원반(본청 1개·지방청 7개·세무서 130개, 총 423명)
 -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(국번없이 126번 > 6번)와 누리집에 안내코너*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 - *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> 국세정책/제도 >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
 - 아울러, 이번 신고 시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제 요건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,
 - 공제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합니다.
 - *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> 국세신고안내 > 개인신고안내 > 종합소득세 > 주요서식 작성요령/사례, 동영상 자료실

공제대상	소상공인 임차인*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* 사행행위 관련업, 금융·보험업,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
공제율	임대료 인하액의 50% * ('21년 귀속)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70%
적용배제	무신고·기한후신고,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
기타사항	10년간 이월공제 가능, 최저한세 적용배제, 농특세 과세
제출서류	1.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2.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(확약서, 약정서 등) 3. 세금계산서,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.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)

- (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)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*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%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경산시·청도군·봉화군('20. 3. 15. 선포)

감면대상	▶ 감염병 집단 발생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* * 부동산 임대·공급업, 전문직 서비스업,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·보험업 등 제외
감면율	▶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 소기업 60%, 중기업 30%
한도	▶ 2억 원(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수한 경우는 2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 원씩을 뺀 금액)
적용배제	▶ 무신고·기한후신고,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
기타사항	▶ 최저한세 적용배제, 농특세 비과세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

3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

1. 쉽고 편한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

- (납세서비스 재설계)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,
 -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여 제공합니다.

1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 최초 제공

- 소규모(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)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올해 최초로 제공합니다.
 -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*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,
 - *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
 -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*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합니다.
 - * 모바일 앱(손택스) 포함
-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.
 - * 일반신고서(분리과세)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 선택 시 세액까지 자동계산



구 분	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음	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음
대 상	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	
	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는 경우	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
안내유형	모두채움 서면안내	다른 소득과 함께 안내 * 안내문에 주택임대 수입금액 기재
모두채움 등 제공방법	서면 + 홈택스(모바일 포함)	홈택스(모바일 포함)
홈택스 신고방법	홈택스 > 로그인 > 종합소득세 신고 >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	홈택스 > 로그인 > 종합소득세 신고 > 일반신고서(분리과세 선택)

②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신고 확대

-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·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
③ 모바일·ARS 신고 확대

- 단순경비율·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, 종교인소득, 비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,
-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는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.

④ 대화형 신고 신규 제공

-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은 세법규정·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·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합니다.

2. 신고도움자료 정교화

- (사전 자기검증) 수입금액 누락 및 부당감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수입금액	부가세·사업장현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과 신고금액 일치 여부 검증
중복입력	근로·연금·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검증
부당감면	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·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 신청 시 부당감면 여부 검증

- 또한,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 · 감면* 점검표도 제공합니다.
 - *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, 창업중소기업감면,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,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, 외국 납부세액공제, 배당세액공제, 착한임대인 세액공제
- (신고도움서비스 시각화) 단순 나열식의 기존 도움자료를 성격별 · 중요도별로 5개의 주제별 탭(Tab) 형태로 개편하고,
 - 주요 판매관리비 분석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(전자신고 동영상) 신고서 작성 전(全)단계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하던 것을 작성단계별로 나누어서 화면별 동영상을 제공하여 전자신고 동영상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.
 - 모바일(손택스) 신고 확대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· 주택임대소득 · 종교인소득 모바일 신고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합니다.
 - * (지난해) 단순경비율 모바일 신고 동영상만 제공

3. 홈택스 이용편의 향상

- (시범연장) 소규모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합니다.
 - 단, 5월 신고 마지막 날인 5. 31.(월)은 24시까지 가능합니다.
- (로그인 간소화)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¹⁾, 생체인증²⁾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 - 1) 통신사 PASS, 카카오페이, NHN페이코(Payco), 삼성패스, KB국민은행
 - 2) ①(지문인증) 안드로이드 폰 및 아이폰 모두 가능, ②(얼굴인증) 아이폰만 가능
- 또한, 로그인 화면을 인증방식별 탭(Tab)*으로 제공하고 자주 발생 오류 및 회원가입 · 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홈택스 로그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.
 - * 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, 아이디, 지문인증, 비회원 로그인
- (내비게이션 최초 제공)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*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



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최초로 제공합니다.

* 종합소득세 안내문 선택 >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> 신고서 관리 > 납부

- (안내문 열람)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(서면·모바일 모두)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도 열람*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 홈택스 > 세무대리/납세관리 > 세무대리 공통 > 안내문 조회

- 또한, 모바일 안내문 출력1) 기능을 추가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2)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1) 홈택스(PC) 초기화면 '세무알리미'와 'My 홈택스'

2) 안내문 열람 > '안내문 다운로드' 버튼 클릭 > 휴대전화에 이미지로 저장 > 문자·카톡·이메일·모바일 팩스로 전달

4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로 성실신고 적극지원

- (신고도움서비스)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홈택스 「신고도움서비스」에서 제공합니다.

- (공통 도움자료) 모든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, 수입금액, 소득·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,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.

- (신고 시 유의할 사항)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.

- 특히,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, 신종·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.

|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예시 |

- ▶ (성실신고확인 대상)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업종별 소득률 등을 분석하여 수입금액·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
- ▶ (필요경비 과다계상) 빅데이터를 통해 적격증빙 과소수취 추출,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·외주가공비 과다계상 분석, 성실신고 안내
- ▶ (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) 콘텐츠 창작 사업자(미등록 포함)에게 사업관련 광고수익 등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
- ▶ (호황업종)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한 호황업종 사업자를 추출·분석하여 수입금액·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

- (주택임대) 수입금액, 주택 내역,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사항 등 신고·감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.

- (성실신고 검증)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

원하는 한편,

-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'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'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십시오.

5 개인지방소득세, 신고편의 제고

- (개요) '20. 1. 1.부터 개인지방소득세*를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 - *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.6~4.2%(종합소득세의 10분의 1)
-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- (전자신고)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- 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와 지자체 위택스(www.wetax.go.kr) 실시간 연계
 - (PC)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,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- 1) '20. 1. 1.부터 시행 중,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~2분 소요
 - 2) ① 종합소득세 신고(홈택스) > ② 지방세 신고이동 클릭, ③ 위택스 이동
 - (모바일)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,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(도움창구)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.
 - 다만, 모두채움 납부서*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.
 - * 단순경비율(F·G유형), 종교인(Q·R유형),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(V유형)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납세자(위택스 "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찾기" 검색 가능)에게 서면 안내문 발송
- (납세편의)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 - (신고 간소화)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,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.
 - (간편납부) 위택스(PC)나 스마트 위택스(모바일)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,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*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.



- * 현금지급기(CD) 및 현금자동입출금기(ATM)는 본인명의 통장·카드 필요
 - (납기알림 지원)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.
 - (언제든 콜센터)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, 신고·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(☎ 1661-0544)를 운영(5월) 합니다.
 - (세정지원)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.
 - *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·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
- 앞으로도,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,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·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참고 1. 착안임대인 세액공제

● 요건 및 내용

공제개요	▶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(조특법 § 96의3 및 동법 시행령 § 96의3)
공제대상	▶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단,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(조특법 128조) -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-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- 사업용계좌,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</div>
대상건물	▶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
임차인 요건 (모두충족)	①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 ② '20. 1. 31.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③ 배제업종(사행행위, 과세유형장소 등 별표 14의 업종)을 영위하지 않는 자 ④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⑤ 사업자등록을 한 자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* 소상공인(아래 기준 모두 충족) - 매출액 기준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- 상시근로자수 기준: 5인 미만(제조, 광업, 건설, 운송업은 10인 미만)</div>
공제기간	▶ '20. 1. 1~'21. 12. 31. 까지

세액 공제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임대료 인하액¹⁾의 50%²⁾를 소득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'임대료 인하액'(아래 ①에서 ②를 뺀 금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② 임대료 인하 합의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2) '21년 인하분은 70% (단,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%)
공제신청 및 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과세표준신고서*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일반신고서'서식 사용(모두채움은 착한임대세액공제 신청 불가) ① 인하 직전 계약서 및 인하 후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서 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③ 세금계산서,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)
공제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·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(갱신등은 5% 초과)한 경우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저한세 적용 배제 ▶ 농어촌특별세 과세(공제세액의 20%) ▶ 10년간 이월공제(사업소득(부동산임대 포함)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)

● 배제업종 (임차인)

○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(조특법 시행령 별표14)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

업종분류	분류코드	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
가. 제조업	C33402	영상게임기 제조업(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)
	C33409	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)
나. 정보통신업	J5821	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)
다. 금융 및 보험업	K64	금융업
	K65	보험 및 연금업
	K66	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[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(6619)은 제외한다]



라. 부동산업	L68	부동산업[부동산 관리업(6821)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제외한다]
마.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O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바. 교육 서비스업	P851	초등 교육기관
	P852	중등 교육기관
	P853	고등 교육기관
	P854	특수학교,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
사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아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94	협회 및 단체
자.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	T97	가구 내 고용활동
	T98	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
차. 국제 및 외국기관	U99	국제 및 외국기관

2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

●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(임차인)

- 소기업의 매출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 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 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등 50억 원 이하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30억 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10억 원 이하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6 세법 개정사항 요약

-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(소법 §12)
 - 비과세 대상 확대 →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포함
-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(소법 §12, 소령 §9, §9의5)
 -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



-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* 신설
 - (비과세대상)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
 - (비과세한도)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
-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(소법 §14, §64의3, §70, §73)
 - 다른 기타소득과 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(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)을 다음과 같이 확대
 -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*
 - * 상기 이외의 위약금·배상금은 현재 분리과세
 -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
-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(수입금액 제외)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(소법 §26②, 법법 §18, 소령 §54①)
 -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(수입금액 제외)되는 자산수증이익 중 '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'의 단서조항 신설
 - (단서신설)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*은 제외
 - * 보조금관리법, 지방재정법, 법인령§ 64⑥ 각 호의 법률(전기사업법 등)에 따른 보조금
 -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·과세기간분부터 적용
 - 2010.1.1.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
-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(소법 §59의2)
 - 이동수당과 중복적용 방지를 위해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공제대상에서 제외
-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(소법 §81의7, 법법 §75의4①)
 -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% → 5%
-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(소령 §8의2③)
 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
 -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*이 연간 600만 원 이상
 - *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(간주임대료 제외) × 지분을
 -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%를 초과*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
 - * 기준시가(9억 원), 지분율(30%)은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
 -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*에 가산된 경우 다음순서(①→②)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
 -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
 - ②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,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
 - *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
-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(소령 §37의2)
 -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
 - (단서신설)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'18.1.1. 이후 취득하여

양도한 경우에 한함

-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(소령 § 122의2①3)
 - 임대료(임대보증금) 증액제한 요건보완
 - 증가율이 5%이하일 것(연 기준 삭제)
 -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
 -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「민간임대주택법」을 준용
 - 1) (임대료 5% 증액 제한) 2020. 2. 11.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
 - 2) (임대료 전환비율) 2020. 2. 11.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
-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(소법규칙 § 23, § 57)
 - 이자율 연 2.1% → 1.8%
-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(소법규칙 § 67)
 -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위하여 소득상한배율 인상
 - 1) 간편장부대상자 (2.6 → 2.8)
 - 2) 복식부기의무자 (3.2 → 3.4)
-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(조특법 § 99의12)
 - (공제대상) '20. 12. 31.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'20. 4. 1.~'20. 7. 31. 기간 중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
 - (결제수단) 현금, 신용·직불·선불카드, 전자지급수단
 - (공제금액) 선결제 금액* × 1%
 - * 2020. 12. 31.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,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
 - (제외업종) 아래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·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
 - *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, 유흥주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변호사업·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
 - (적용시기) 2020. 12. 31.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
 - (신청절차)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아래의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
 - ① 선결제증빙서류(현금영수증, 신용카드매출전표, 세금계산서)
 - ②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
 - ③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
-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(조특법 § 8의4, 조특령 § 7의3)
 - (지원대상)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 - (지원내용) '20. 12. 31.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*(환급대상기간)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 환급
 - *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
 - (결손금 범위) {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* 관련 「필요경비 - 총수입금액」} - 근로·연



- 금·기타·이자·배당소득금액
 - *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
- (지원요건) 2020년의 직전과세연도에 소득세액을 신고
- (환급세액) ① - ②
 - ①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%
 - ② [(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-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× 2) ×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]의 50%
- (환급한도)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
- (환급세액 추징) 신청내용의 탈루·오류 등의 경우* '과다환급세액+이자상당액' 징수
 - * ① 신청내용에 탈루·오류 등으로 결손금 감소
 - ②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
 -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(신청방법)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* 결손금 조기소급공제 신청서 제출
 - * 개인사업자의 경우 '20. 8. 31.
- (환급세액 정산) 추후 '20. 12. 31.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(신청에 한함)·징수*
 - * ① (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)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·징수
 - ② (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)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
- (환급세액 추징시* 이자상당액) 추징 환급세액 ×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추징고지일까지의 일수 × 0.025%
 - * 신청내용의 탈루·오류, 경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 추징
-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99의11)
 -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
 - (대상)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
 -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전문직 서비스업, 사행성 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*
 - *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
 - (감면내용) '20. 6. 30.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소기업 60%, 중기업 30% 감면
 - * (참고)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: 소기업은 10~30%, 중기업은 5~15%
 - (감면한도) 2억원*
 - * (참고)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: 1억원
 - (최저한세 등) 최저한세 적용 배제
 - 다른 세액감면·공제제도*와는 중복적용 불가
 - *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하나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
 -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
 - 2020. 6. 30.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

-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(농특령 § 4)
 - 비과세대상에 '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' 추가
-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(조특법 § 126의2②)
 - 2020년 3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
 - 신용카드: 30%
 - 현금영수증 · 직불형카드 · 기명식 선불카드 등: 60%
 - 도서 · 공연 · 박물관 · 미술관 사용분: 60%(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)
 - 전통시장 · 대중교통 사용분: 80%
 - 2020년 4월~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 · 대상에 상관없이 80%
 - 2020년 8월~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
-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(조특법 § 136④,⑤)
 - 접대비 필요경비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(2020년 한시 적용)

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통 화 명	4월 30일(금)	5월 3일(월)	5월 4일(화)	5월 6일(목)
미 달 러 (USD)	1107.40	1109.60	1119.30	1121.10
일 본 엔 (JPY)	1016.90	1015.05	1026.27	1026.51
영 국 파 운 드 (GBP)	1544.55	1533.41	1556.39	1558.89
캐 나 다 달 러 (CAD)	901.75	903.44	911.67	913.54
홍 콩 달 러 (HKD)	142.64	142.87	144.12	144.30
위 안 화 (CNH)	171.20	171.48	172.71	173.21
유 로 화 (EUR)	1342.33	1334.63	1349.76	1345.99
호 주 달 러 (AUD)	860.62	856.33	868.63	868.52
싱 가 폴 달 러 (SGD)	834.89	834.29	841.86	839.49
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(MYR)	269.93	270.93	272.72	272.28